

카자흐스탄의 사법체계

윤 정 화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특집 Emerging Countries Ⅲ]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I. 들어가며

1. 카자흐스탄 법 체제의 특징
2. 카자흐스탄 사법시스템의 개관

II. 카자흐스탄의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1. 헌법위원회 개관
2. 헌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3. 헌법위원회의 권한
4. 헌법위원회의 심판절차 및 결정

III. 카자흐스탄의 사법기관

1. 대법원(Supreme Court)
2. 주법원(Oblast Court, 특별시의 경우는 City Court)
3. 지방법원(District Court)

IV. 법관의 독립보장과 교육

1. 법관의 자격과 임명
2.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
3. 사법자격부여협의회(The Qualifying Board of Justice)
4. 법원 아카데미(Court Academy)

V. 맺음말

I. 들어가며

1. 카자흐스탄 법 체제의 특징

1) 대륙법 체제

카자흐스탄은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국 형태를 지닌 국가¹⁾이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²⁾ 카자흐스탄의 법 체제는 로마 독일계(Roman Germanic family)의 대륙법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체제와 유사한 특징³⁾을 가지고 있다.

2) 러시아 법제의 영향

카자흐스탄의 법제도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랜 역사적 배경으로 구소련 법제도 및 러시아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련의 붕괴 후에도 카자흐스탄의 법제도는 상당부분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법제도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민법과 상법이 구분되지 않은 민상합일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불완전한 법치주의 국가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헌법 제2조 1항.

2) 헌법 제3조 4항.

3)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민사법분야, 형법분야, 행정법분야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분야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4) 러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러시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를 당하는 데 있어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사법제도는 헌법재판소와 개인 및 법인들 사이의 비상업적 분쟁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법인과 법인 사이, 개인사업자 사이, 외국 또는 러시아 기업 및 개인사업자 사이의 상사적 분쟁을 다루는 중재법원을 두고 있다. 기업간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 특별소송 제도로서 중재법원을 두는 것으로, 지방에서 분쟁소송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스크바 소재 중재대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 의한 중재도 유력한 방법이다.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는 일찍이 공산체제에서도 상사분쟁위원회(IAC)를 설치해 두고, 각종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사분쟁위원회는 러시아내 유력 법률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능력과 공정성은 국내외적으로 평판이 높으며, 법적으로도 IAC의 판정은 다른 사법기관의 결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또한 러시아의 소송구조는 서구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의 민사소송절차는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구처럼 재판을 지연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은 사실 조사 절차단계에서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에 대해 비호의적이나 러시아의 민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재판을 관할하는 판사의 상사 분쟁에 대한 경험은 많이 부족하다. 판사들의 미숙력은 최근의 시장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소송비용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러시아 민사소송의 문제점이다.

5)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과 외국인 법인은 카자흐스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를 당하는 데 있어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2. 카자흐스탄 사법시스템의 개관

1) 법원의 지위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은 법원에서만 수행하고,⁶⁾ 사법권은 민사, 형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형태의 재판을 수행⁷⁾하는 한편 사법권은 헌법, 법률, 기타 법규 및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미친다.⁸⁾ 카자흐스탄의 헌법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에 기반하고 상호제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체제를 채택하고 있다.⁹⁾

2) 법원의 구성

카자흐스탄은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는 주 법원(Oblast Court) 및 2개의 특별시에 설치된 시법원(City Court)이 있다(주법원의 하위 법원인 군법원, 시법원의 하위법원인 구법원이 이에 해당함).¹⁰⁾ 그러나 특별법원과 임시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¹¹⁾

II. 카자흐스탄의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¹²⁾

1. 헌법위원회 개관

1991년 12월 16일에 ‘국가 독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의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에 따라 1992년 7월 2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1995년 10월까지 존치하였다. 1995년 8월 30일에 제정된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6) 헌법 제75조 제1항.

7) 헌법 제75조 제2항.

8) 헌법 제76조 제1항.

9) 헌법 제3조 4항.

10)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JUDICIAL SYSTEM AND STATUS OF JUDG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25 Decemberr 2000 No. 132-II ZRK,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3. The Judicial System.

11) 헌법 제75조 제4항.

12) “ABOUT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The conc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stan from December, 29, 1995 No 2737.

헌법위원회로 대체하였으며, 1996년 2월에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현행 카자흐스탄 헌법은 2009년 8월 30일 국민투표로 채택이 되었고, 1995년 9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현행 헌법의 효력발생으로 1993년 헌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최고 우위성(supremacy)을 담보하기 위한 기관으로 권한 행사에 있어 독립을 유지하고 헌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규정¹³⁾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관으로서 개인의 청원을 허용하고 법률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데 반하여 헌법위원회는 청원권자(개인 청원 제외) 및 심판대상(법원의 제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법률만 심사)을 한정하였다.

2. 헌법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1) 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카자흐스탄의 헌법위원회는 위원장(chairman)을 포함한 7명의 위원(Member)으로 구성된다.¹⁴⁾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며,¹⁵⁾ 2인은 상원의장(Chairperson of Senate), 나머지 2인은 하원의장(Chairperson of Majilis)에 의해 지명한다.¹⁶⁾

2)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임기, 지위 및 정년 등

헌법위원회 재판관의 자격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법학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전임 대통령은 예외)이어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¹⁷⁾ 헌법위원회 위원들 중 절반은 매 3년마다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한다.¹⁸⁾ 단, 자신이 관여한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당해 사건에 관여한다. 헌법위원회에 청구된 모든 사건은 제소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¹⁹⁾

13) 헌법위원회법 제1조.

14) 헌법 제71조 1항.

15) 헌법 제71조 2항, 3항.

16) 헌법 제71조 3항.

17) 헌법 제71조 1항.

18) 헌법 제71조 3항.

19) 헌법 제73조 제3항.

헌법위원으로 지명되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선서하고,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국회의원이거나 다른 유급의 지위를 겸직할 수 없으며(교직이나 학문 관련 지위는 예외) 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상사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다.²⁰⁾ 또한 임기 동안 의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 행정상 처벌이나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다(범죄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²¹⁾

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사건의 접수 및 결정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위원회 투표에서 동수를 이루는 경우 마지막으로 투표하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정년은 60세이며 예외적인 경우는 65세까지 연장을 한다. 그러나 전임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종신직이라고 할 수 있다.²²⁾

3. 헌법위원회의 권한

1) 합헌성 심사

카자흐스탄의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다루는 분쟁사건인 선거소송을 심판하고,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대통령의 서명 전까지만 가능)하며, 비준되기 전 국제조약의 위헌여부심판을 한다. 의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질병으로 인한 사임 포함) 절차의 합헌성 여부를 심판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의해 내용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²³⁾

2) 헌법에 대한 공식적 유권해석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하원 의원의 1/5 이상의 결의, 총리는 특정한 헌법조항 해석에 있어 헌법위원회의 공식적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²⁴⁾ 예를 들어 헌법 52조 4항 및 71조 5항 등에 규정된 중범죄(grave crimes)라는 용어는 형법에서 사용되는 중범죄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헌법 위원회 Resolution No. 10, 2003. 1. 30)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20) 헌법 제71조 4항.

21) 헌법 제71조 5항.

22) 헌법 제71조 제1항.

23) 헌법 제72조.

24) 헌법 제72조 1항.

3)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

법원은 어떠한 법률이나 정부의 법적 행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선언을 제청하여야 한다.²⁵⁾

4. 헌법위원회의 심판절차 및 결정

1) 청구권자 및 심판청구

심판사건의 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한 심판을 제외하고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하원 의원의 1/5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와 총리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²⁶⁾ 개인에 의한 심판청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규범통제에 해당하는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은 일반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헌법위원회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2) 사전심사

사건 접수 후 3일 안에 위원장은 사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헌법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와 청구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청구 자체가 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화된 경우와 같은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한다.

3) 심사 기간 및 정족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달 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사안이 위급하여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 기간이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²⁷⁾ 이때 심판 정족수는 위원의 2/3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²⁸⁾

25) 헌법 제78조.

26) 헌법 제72조.

27) 헌법 제73조 3항.

28) 헌법 제73조 4항.

4) 본안 심사

헌법위원회의 사건 심리와 결정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진행하며,²⁹⁾ 두 언어를 모르는 참가자의 경우는 통역이 제공된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을 위원들에게 배당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만약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 청구된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 병합하여 심리가 가능하다.

사건을 배당받은 위원은 심사 기일에 맞춰 사건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건 참가자를 결정하고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필요 사항은 요청하여 심사 기일 최소 이틀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다른 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결정 초안 작성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도 준비하여야 하며, 사건의 심사는 우리의 변론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5) 사건의 종결 및 결정

심판 청구가 취소된 경우와 심판 대상이 된 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경우 그리고 청구된 사건이 헌법위원회의 권한 밖일 때의 경우 심판 절차의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헌법위원회는 합의체로서 전체 위원 수에 대한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투표가 동수인 경우 항상 마지막에 투표하는 위원장의 투표에 따라 결정하고, 위원들은 투표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반드시 투표하여야 한다. 표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1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되고,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6) 재심 및 결정의 효력

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위원회 직권에 의해서만 재심이 가능하다. 이때 재심의 사유로는 상황이 변화됐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 전체에 기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하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결정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10일 내에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위원 2/3의 투표로 결정을 재확정할 수 있고, 2/3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의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29) 헌법 제7조 1항과 2항.

취소된다.³⁰⁾

Ⅲ. 카자흐스탄의 사법기관³¹⁾

1. 대법원(Supreme Court)

카자흐스탄에서 대법원은 민·형사 및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법률에 명시된 사법절차에 대한 감독과 판결에 대한 해석을 한다. 카자흐스탄은 헌법 및 법규범에서 대법원 판결도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³²⁾ 대법원도 주법원과 마찬가지로, 감독부(Supervisory College), 민사부(Civil Case College), 형사부(Criminal Case College)로 구성되며, 전체 회의(Plenary Session)가 있다.

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장, 각 부의 재판장인 대법관, 일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전체 대법관의 숫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령이 결정하는바, 보통은 45명에서 50명 정도이다. 민사부와 형사부는 주법원에서 제1심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법원의 감독부에서 선고한 사건에 대한 심사 기능도 수행한다

감독부는 민사부와 형사부의 판결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감독부의 판결은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경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검찰총장의 상고에 의하여 다시 심리될 수 있을 뿐이다.

2. 주법원(Oblast Court, 특별시의 경우는 City Court)

카자흐스탄의 주법원은 감독부(Supervisory College), 민사부(Civil Case College), 형사부(Criminal Case College)로 구성되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30) 헌법 제73조 4항.

31)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JUDICIAL SYSTEM AND STATUS OF JUDG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25 Decemberr 2000 No. 132-II ZRK, SECTION 2. THE JUDICIAL SYSTEM.

32) 헌법 제4조.

항소심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1심으로서 재판한다.

감독부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특별항소(Supervisory notice of opposition) 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사부 또는 형사부가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는 재판장과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다. 감독부의 재판장은 주법원장이 담당하고,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Plenary Session)가 연 2회 이상 개최되어, 부의 증감, 감독부 구성원의 선발을 결정하거나, 행정업무의 감독 등을 시행한다

3. 지방법원(District Court)

카자흐스탄에서 지방법원은 1심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며,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사법부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

주법원의 하위 법원으로는 군법원, 시법원의 하위법원으로는 구법원이 있는 바, 이를 모두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지방법원은 법원장과 소속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원장 1명만 있는 법원도 있다. 과거에는 모두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93년 이후 대법원 산하의 기관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게 되었다.

IV . 법관의 독립보장과 교육³³⁾

1. 법관의 자격과 임명

1) 법관의 자격

지방법원의 법관이 되기 위하여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법학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을 합격한 후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등 적어도 2년간 법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쌓아야 하며, 주법원 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하여는 위 조건 이외에도 5년간 법률 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보통 이 중 2년 이

33)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JUDICIAL SYSTEM AND STATUS OF JUDG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25 Decemberr 2000 No. 132-II ZRK, SECTION 3. THE STATUS OF JUDGES.

상은 법관으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법관이 정의를 실행하는 데에 독립과 종속은 헌법과 법률에만 의한다.³⁴⁾

2) 임명 절차

가. 지방법원의 법관

지방법원 법관은 사법자격부여협의회(The Qualifying Board of Justice)에서 경쟁적인 평가 체제를 실시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법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 사법자격부여협의회에서는 결원의 보충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응시하면 평가를 거쳐 적정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지방법원장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나, 다만 사법자격부여협의회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주법원의 전체회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하게 된다.³⁵⁾

나. 주법원의 법관

주법원의 법관은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가 위와 같은 공고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적정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주법원장이나 재판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전체회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³⁶⁾

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가 책임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상원에서 선출한다. 다만 일반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평가를 감안하여 최고사법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추천하게 된다.³⁷⁾

2.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대법원 및 주법원의 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책임자를 선

34) 헌법 제77조 1항.

35) 헌법 제82조 3항.

36) 헌법 제82조 2항.

37) 헌법 제82조 1항.

발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또는 추천하게 된다(주법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의 경우 상원에서 선출).

또한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위원회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및 2명의 상원의원, 6명의 법관(대법관 2명, 주법원의 법관 2명, 지방법원의 법관 2명)으로 구성되며,³⁸⁾ 헌법위원회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이고, 상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3년, 6명의 법관의 경우 임기가 2년이다.

3. 사법자격부여협의회(The Qualifying Board of Justice)

사법자격부여협의회는 하원의원, 법관, 검사, 법학자, 법조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된 자율적이고 독립된 기구이고, 지방법원의 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경쟁적인 평가체제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한다.

4. 법원 아카데미(Court Academy)

체제 전환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법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2001년 12월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법관과 법원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원(The institute for raising the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of judges and court employees)’이 설립되었다가, 위 기관이 2003년 9월 법원 아카데미로 변모하게 되었다.

학문적인 기초만을 제공하는 종래의 법과 대학의 교육이 재판에 대한 철저적인 이해 또는 판결문 등 법률서식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에, 신규 법관 또는 기존의 법관 및 법원 직원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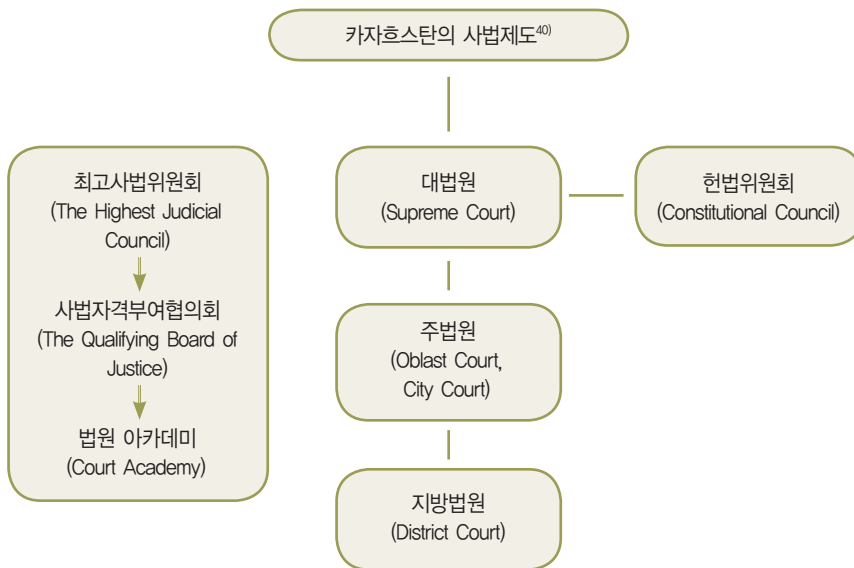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은 우리의 법률체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38) 헌법 제82조 4항.

법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판은 법원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며,³⁹⁾ 대법원, 주법원, 시법원 등의 3심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법자격부여협의회와 법원 아카데미와 같은 법관의 교육과 임명에 대한 독립된 기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의 최고 우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다른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가장 약한 편이며,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소송시에는 법률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치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총괄해 줄 수 있는 변호인단 구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 <http://www.supcourt.kz>
- <http://www.constcouncil.kz>
- <http://world.moleg.go.kr/worldmain.do>
- The constitution of Kazakhstan
-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JUDICIAL SYSTEM AND STATUS OF JUDGE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25 Decemberr 2000 No. 132-II ZRK
- "ABOUT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conc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azakstan from December, 29, 1995 No. 2737



39) 헌법 제75조 1항.

40) ADB, supra note 1, at 14 Figure 1. 참조.